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3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 명<br>생 년 월 일    | 주 소              | 지연 신고사항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오**    | 오**<br>1986-12-14 |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19번길 | 무단전출   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김 희준 문의전화 : 033-631-1401 )

2015년 03월 17일

영랑동장인

